

# 小河川整備法施行規則

制定 1995. 7. 6 內務部令 第652號

- 第 1條(目的)
- 第 2條(小河川指定 告示등)
- 第 3條(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樹立節次)
- 第 4條(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樹立節次)
- 第 5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樹立節次)
- 第 6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公告)
- 第 7條(小河川臺帳)
- 第 8條(非管理廳의 小河川工事施行許可申請등)
- 第 9條(小河川工事 竣工檢査申請등)
- 第 10條(占用등의 許可節次)
- 第 11條(占用許可期間등)
- 第 12條(占用등의 許可申請書등)
- 第 13條(原狀回復義務免除申請)
- 第 14條(許可의 效力回復 申請)
- 第 15條(小河川收益 및 費用管理臺帳)
- 第 16條(廢川敷地의 交換申請등)
- 第 17條(綜合計劃의 變更承認 報告)

附 則

## 小河川整備法施行規則

制定 1995. 7. 6 內務部令 第652號

- 第1條(目的) 이 規則은 小河川整備法(이하 “法”이라 한다) 및 同法施行令(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小河川指定 告示등) ① 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第1號서식에 의하여 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第2號 서식에 의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고시는 그 管理廳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사 “市·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內務部長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第3條(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樹立節次) ① 管理廳이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에 대하여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號의 서류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綜合計劃의 내용중 小河川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할 地方環境管理廳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별지 第3號서식의 小河川실태조사서
2. 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小河川의 종합도(축적 2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計劃을 제출받은 市·道知事は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內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의 고시는 별지 第4號서식에 의한다.

第4條(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樹立節次) ① 管理廳이 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整備中期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內務部長官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中期計劃에 별지 第5號서식의 小河川整備中期計劃 내역서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제출받은 市·道知事は 종합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內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樹立節次) ① 管理廳이 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小河川별로 다음 각號의 시행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小河川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小河川별로 사업시행의 위치 사업량·사업비 기타 사업효과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별지 第6號서식에 의하여 수립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그 시행계획에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대상중에 농어촌특별세로 추진하는 農漁村汚染小河川整備事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관할 地方環境管理廳長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市·道知事は 영 第6條第1項 각號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內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公告) ① 管理廳은 法 第8條第1項 본문의 規定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설계도서가 작성된 때에는 시행계획을 그 管理廳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第7號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第7條(小河川臺帳) ① 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臺帳은 별지 第8號서식에 의한 小河川現況臺帳과 별지 第9號서식에 의한 小河川許可臺帳으로 한다.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現況臺帳을 연 1회이상 小河川許可臺帳을 월 1회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第8條(非管理廳의 小河川工事施行許可申請등)

① 영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工事施行許可申請서는 별지 第10號서식에 의한다.

② 영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工事施行許可내용의 公고는 별지 第11號서식에 의한다.

第9條(小河川工事 竣工檢査申請등) ① 영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申請書는 별지 第12號서식에 의하고 竣工認可證은 별지 第13號서식에 의한다.

② 영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工事 착공 또는 竣工期間延長의 申請은 별지 第14號서식에 의한다.

第10條(占用등의 許可節次) ① 法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의 占用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第10號서식의 小河川 占用·사용허가신청서를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申請의 目的이 시설 또는 公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管理廳이 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의 占用 또는 사용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영 第7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管理廳이 小河川의 占用 또는 사용을 許可한 때에는 그 許可내용을 별지 第11號서식에 의하여 당해 管理廳의 公보 또는 게시판에 公고하여야 한다.

第11條(占用許可期間등) ① 法 第14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占用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별표에 정한 기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小河川區域에 관하여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公共事業

施行計劃이 있거나 占用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許可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第14號서식의 小河川占用·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2條(占用등의 許可申請書등) ① 法 第

14條第3項 및 영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는 별지 第15號서식에 의한다.

② 영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고는 별지 第11號서식에 의하여 그 管理廳의 公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第13條(原狀回復義務免除申請) 法 第16條

第1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原狀回復義務免除申請은 별지 第16號서식에 의한다.

第14條(許可의 效力回復 申請) 法 第20條

단서의 規定에 의한 許可효력회복申請은 별지 第17號서식에 의한다.

第15條(小河川收益 및 費用管理臺帳) 管理

廳은 法 第21條 및 영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수익 및 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管理臺帳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第16條(廢川敷地의 交換申請등) ① 영 第

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川敷地의 교환 신청은 별지 第18號서식에 의한다.

② 管理廳은 小河川의 정비등으로 廢川敷地가 생긴 때에는 廢川敷地管理臺帳을 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第17條(綜合計劃의 變更承認 報告) 영 第

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변경승인내용을 內務部長官 및 環境部長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附 則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기간

(제11조 관련)

허 가 사 항	기 간
1. 유수의 점용	5년
2. 토지의 점용	5년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5년
4. 소하천부속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설계서상의 공기
5.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기
6.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1년
7.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1년
8. 소하천의 오손행위	1년
9.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등을 위한 점용	영구
10. 기타 소하천점용	1년

비고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制定理由

小河川整備法 및 同法施行令이 制定(1995. 1. 5 法律 第4,873號 및 1995. 7. 1 大統  
령令 14,693號)됨에 따라 小河川整備計劃의 수립절차와 占用등의 허가기간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서식등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승인요청시에는 小河川實態調查書 및 소하천종합도를  
첨부하도록 함(第3條)
- 나. 小河川整備計劃 수립시에는 小河川別로 재해예방·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소  
득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정비대상 小河川을 선정하도록 함(第5條)
- 다. 小河川의 점용·사용등의 허가절차와 허가사항별 허가기간을 정함(第10條 내  
지 第11條 및 별표)
- 라. 小河川指定告示, 小河川施行計劃公告, 小河川占用·使用許可申請書 및 廢川  
敷地交換申請書등 각종 서식을 정함(별지 第4號서식등)

<내무부 제공>